
2017년

지역별 · 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

2018. 1.



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

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

순서

I. 신출 기준	1
II. 지역별 · 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	2
II-1. 전체 사건	2
II-2. 일반 사건	3
III. 용어 정의	4

I. 산출 기준

□ 산출 기준

- 본 통계 자료는 2017. 1. 1. ~ 2017. 12. 31.까지 접수된 사건 중 절차 참여 여부 확인까지 완료된 사건 기준
- 각 통계표상 표시된 지역은 의료기관의 소재지 기준이며, 기준 및 단위는 오른쪽 위에 표시함. 부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

- '-': 해당사항 없음 또는 발생하지 않음

- '일반 사건'은 피신청인에 대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묻는 사건에 대한 통계(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8항, 이하 의료분쟁조정법)이며, '전체 사건'은 위 일반 사건과 조정신청의 대상이 일부 요건*을 갖추시 절차가 바로 개시되는 사건(「의료분쟁조정법」 제27조제9항)의 계수를 합친 통계임

*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Ⅱ. 지역별 · 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

Ⅱ-1. 전체 사건

(2017.1.1. ~ 2017.12.31.(접수일) 기준, 단위: 건, %)

구분		계	상급 종합 병원	종합 병원	병원	치과 병원	한방 병원	요양 병원	의원	치과 의원	한의원	약국	보건소	보건 의료원	보건 지소	조산원
계	개시	1,381	326	340	305	15	9	38	216	109	19	2	2	-	-	-
	각하	1,035	173	309	194	10	6	15	221	83	23	-	1	-	-	-
	개시율	(57.2)	(65.3)	(52.4)	(61.1)	(60.0)	(60.0)	(71.7)	(49.4)	(56.8)	(45.2)	(100.0)	(66.7)			
서울	개시	426	141	63	80	-	5	5	86	40	5	1	-	-	-	-
	각하	328	78	66	52	5	2	2	87	30	6	-	-	-	-	-
	개시율	(56.5)	(64.4)	(48.8)	(60.6)	(0.0)	(71.4)	(71.4)	(49.7)	(57.1)	(45.5)	(100.0)				
부산	개시	88	19	14	26	1	-	4	15	7	2	-	-	-	-	-
	각하	83	10	21	17	1	-	1	20	9	3	-	1	-	-	-
	개시율	(51.5)	(65.5)	(40.0)	(60.5)	(50.0)		(80.0)	(42.9)	(43.8)	(40.0)		(0.0)			
인천	개시	88	18	20	26	1	-	2	13	7	1	-	-	-	-	-
	각하	70	21	26	11	-	1	-	5	6	-	-	-	-	-	-
	개시율	(55.7)	(46.2)	(43.5)	(70.3)	(100.0)	(0.0)	(100.0)	(72.2)	(53.8)	(100.0)					
대구	개시	55	25	7	13	2	-	1	5	2	-	-	-	-	-	-
	각하	39	9	6	15	1	-	-	6	-	2	-	-	-	-	-
	개시율	(58.5)	(73.5)	(53.8)	(46.4)	(66.7)		(100.0)	(45.5)	(100.0)	(0.0)					
광주	개시	42	13	11	11	-	2	2	2	1	-	-	-	-	-	-
	각하	31	4	5	7	1	-	1	9	4	-	-	-	-	-	-
	개시율	(57.5)	(76.5)	(68.8)	(61.1)	(0.0)	(100.0)	(66.7)	(18.2)	(20.0)						
대전	개시	59	9	30	8	-	-	-	7	5	-	-	-	-	-	-
	각하	30	2	11	5	-	1	1	7	3	-	-	-	-	-	-
	개시율	(66.3)	(81.8)	(73.2)	(61.5)		(0.0)	(0.0)	(50.0)	(62.5)						
울산	개시	22	4	8	9	-	-	-	-	-	1	-	-	-	-	-
	각하	16	4	3	3	-	-	1	4	1	-	-	-	-	-	-
	개시율	(57.9)	(50.0)	(72.7)	(75.0)			(0.0)	(0.0)	(0.0)	(100.0)					
세종	개시	4	-	-	-	-	-	-	3	1	-	-	-	-	-	-
	각하	5	-	-	1	-	-	-	2	2	-	-	-	-	-	-
	개시율	(44.4)			(0.0)				(60.0)	(33.3)						
경기	개시	299	36	87	78	6	2	12	47	26	3	-	2	-	-	-
	각하	226	30	84	43	1	-	4	40	19	5	-	-	-	-	-
	개시율	(57.0)	(54.5)	(50.9)	(64.5)	(85.7)	(100.0)	(75.0)	(54.0)	(57.8)	(37.5)		(100.0)			
강원	개시	32	4	18	2	1	-	1	4	2	-	-	-	-	-	-
	각하	31	1	20	5	-	-	-	5	-	-	-	-	-	-	-
	개시율	(50.8)	(80.0)	(47.4)	(28.6)	(100.0)		(100.0)	(44.4)	(100.0)						
충북	개시	37	5	15	10	-	-	1	4	2	-	-	-	-	-	-
	각하	21	4	5	2	-	1	-	6	1	2	-	-	-	-	-
	개시율	(63.8)	(55.6)	(75.0)	(83.3)		(0.0)	(100.0)	(40.0)	(66.7)	(0.0)					
충남	개시	49	15	13	5	-	-	2	8	3	3	-	-	-	-	-
	각하	27	3	6	4	-	-	2	11	1	-	-	-	-	-	-
	개시율	(64.5)	(83.3)	(68.4)	(55.6)			(50.0)	(42.1)	(75.0)	(100.0)					
전북	개시	31	12	5	9	-	-	2	1	1	1	-	-	-	-	-
	각하	25	3	4	7	-	1	1	7	2	-	-	-	-	-	-
	개시율	(55.4)	(80.0)	(55.6)	(56.3)		(0.0)	(66.7)	(12.5)	(33.3)	(100.0)					
전남	개시	21	3	4	9	-	-	1	3	1	-	-	-	-	-	-
	각하	20	1	9	6	-	-	2	2	-	-	-	-	-	-	-
	개시율	(51.2)	(75.0)	(30.8)	(60.0)			(33.3)	(60.0)	(100.0)						
경북	개시	37	-	17	8	1	-	3	4	3	1	-	-	-	-	-
	각하	34	-	17	8	-	-	-	2	2	5	-	-	-	-	-
	개시율	(52.1)		(50.0)	(50.0)	(100.0)		(100.0)	(66.7)	(60.0)	(16.7)					
경남	개시	76	22	21	11	3	-	2	10	5	1	1	-	-	-	-
	각하	41	3	20	8	-	-	-	8	2	-	-	-	-	-	-
	개시율	(65.0)	(88.0)	(51.2)	(57.9)	(100.0)		(100.0)	(55.6)	(71.4)	(100.0)	(100.0)				
제주	개시	15	-	7	-	-	-	-	4	3	1	-	-	-	-	-
	각하	8	-	6	-	1	-	-	-	1	-	-	-	-	-	-
	개시율	(65.2)		(53.8)		(0.0)			(100.0)	(75.0)	(100.0)					

* 개시율: 개시건수 ÷ (개시건수 + 각하건수) × 100

II-2. 일반 사건

(2017.1.1. ~ 2017.12.31.(접수일) 기준, 단위: 건, %)

구분	계	상급 종합 병원	종합 병원	병원	치과 병원	한방 병원	오양 병원	의원	치과 의원	한의원	약국	보건소	보건 의료원	보건 지소	조산원
계	개시 각하 개시율	998 1,035 (49.1)	178 173 (50.7)	209 309 (40.3)	258 194 (57.1)	15 10 (60.0)	8 6 (57.1)	13 15 (46.4)	187 221 (45.8)	108 83 (56.5)	18 23 (43.9)	2 1 (66.7)	- - -	- - -	- - -
서울	개시 각하 개시율	316 328 (49.1)	78 78 (50.0)	38 66 (36.5)	69 52 (57.0)	- 5 (0.0)	4 2 (66.7)	2 2 (50.0)	79 87 (47.6)	40 30 (57.1)	5 6 (45.5)	1 - (100.0)	- - -	- - -	- - -
부산	개시 각하 개시율	67 83 (44.7)	8 10 (44.4)	8 21 (27.6)	26 17 (60.5)	1 1 (50.0)	- - -	2 1 (66.7)	13 20 (39.4)	7 9 (43.8)	2 3 (40.0)	- 1 (0.0)	- - -	- - -	- - -
인천	개시 각하 개시율	57 70 (44.9)	3 21 (12.5)	13 26 (33.3)	22 11 (66.7)	1 - (100.0)	- 1 (0.0)	- - -	10 5 (66.7)	7 6 (53.8)	1 - (100.0)	- - -	- - -	- - -	- - -
대구	개시 각하 개시율	31 39 (44.3)	10 9 (52.6)	4 6 (40.0)	8 15 (34.8)	2 1 (66.7)	- - -	- - -	5 6 (45.5)	2 - (100.0)	- 2 (0.0)	- - -	- - -	- - -	- - -
광주	개시 각하 개시율	32 31 (50.8)	7 4 (63.6)	9 5 (64.3)	10 7 (58.8)	- 1 (0.0)	2 - (100.0)	2 1 (66.7)	2 9 (18.2)	- 4 (0.0)	- - -	- - -	- - -	- - -	- - -
대전	개시 각하 개시율	45 30 (60.0)	8 2 (80.0)	19 11 (63.3)	7 5 (58.3)	- - -	- 1 (0.0)	- 1 (0.0)	6 7 (46.2)	5 3 (62.5)	- - -	- - -	- - -	- - -	- - -
울산	개시 각하 개시율	16 16 (50.0)	3 4 (42.9)	5 3 (62.5)	7 3 (70.0)	- - -	- - -	- 1 (0.0)	- 4 (0.0)	- 1 (0.0)	1 - (100.0)	- - -	- - -	- - -	- - -
세종	개시 각하 개시율	3 5 (37.5)	- - -	- - -	- 1 (0.0)	- - -	- - -	- - -	2 2 (50.0)	1 2 (33.3)	- - -	- - -	- - -	- - -	- - -
경기	개시 각하 개시율	213 226 (48.5)	16 30 (34.8)	44 84 (34.4)	69 43 (61.6)	6 1 (85.7)	2 - (100.0)	3 4 (42.9)	42 40 (51.2)	26 19 (57.8)	3 5 (37.5)	- - (100.0)	- - -	- - -	- - -
강원	개시 각하 개시율	22 31 (41.5)	1 1 (50.0)	14 20 (41.2)	1 5 (16.7)	1 - (100.0)	- - -	- - -	3 5 (37.5)	2 - (100.0)	- - -	- - -	- - -	- - -	- - -
충북	개시 각하 개시율	24 21 (53.3)	3 4 (42.9)	7 5 (58.3)	8 2 (80.0)	- - -	- 1 (0.0)	- - -	4 6 (40.0)	2 1 (66.7)	- 2 (0.0)	- - -	- - -	- - -	- - -
충남	개시 각하 개시율	38 27 (58.5)	12 3 (80.0)	10 6 (62.5)	3 4 (42.9)	- - -	- - -	1 2 (33.3)	6 11 (35.3)	3 1 (75.0)	3 - (100.0)	- - -	- - -	- - -	- - -
전북	개시 각하 개시율	23 25 (47.9)	10 3 (76.9)	5 4 (55.6)	5 7 (41.7)	- - -	- 1 (0.0)	- 1 (0.0)	1 7 (12.5)	1 2 (33.3)	1 - (100.0)	- - -	- - -	- - -	- - -
전남	개시 각하 개시율	14 20 (41.2)	2 1 (66.7)	2 9 (18.2)	7 6 (53.8)	- - -	- - -	- 2 (0.0)	2 2 (50.0)	1 - (100.0)	- - -	- - -	- - -	- - -	- - -
경북	개시 각하 개시율	22 34 (39.3)	- - -	8 17 (32.0)	6 8 (42.9)	1 - (100.0)	- - -	2 - (100.0)	2 2 (50.0)	3 2 (60.0)	- 5 (0.0)	- - -	- - -	- - -	- - -
경남	개시 각하 개시율	62 41 (60.2)	17 3 (85.0)	17 20 (45.9)	10 8 (55.6)	3 - (100.0)	- - -	1 - (100.0)	7 8 (46.7)	5 2 (71.4)	1 - (100.0)	1 - (100.0)	- - -	- - -	- - -
제주	개시 각하 개시율	13 8 (61.9)	- - -	6 6 (50.0)	- - -	- 1 (0.0)	- - -	- - -	3 - (100.0)	3 1 (75.0)	1 - (100.0)	- - -	- - -	- - -	- - -

* 개시율: 개시건수 ÷ (개시건수 + 각하건수) × 100

Ⅲ. 용어 정의

① 의료분쟁 관련 용어 정의

○ 조정

-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하도록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이끄는 절차를 말하며, 재판 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(「의료분쟁조정법」 제36조)

○ 중재

-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(私法) 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며,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(「의료분쟁조정법」 제44조)

○ 조정 절차 개시

-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료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고,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조정 신청을 각하함(「의료분쟁조정법」 제27조제8항)
- 다만, '16.11.30.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조정신청의 대상이 사망, 1개월 이상 의식 불명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1급의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에 조정절차는 개시됨

② 보건의료기관 종별 유형 정의

○ 상급종합병원

-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

1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
2. 「의료법」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
3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·시설·장비 등을 갖추는 것
4.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(「의료법」 제3조의4제1항 및 「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2조 및 별표)

○ 종합병원

-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함

1.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는 것
2.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·외과·소아청소년과·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, 영상의학과,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
3.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, 외과, 소아청소년과, 산부인과, 영상의학과, 마취통증의학과,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,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(「의료법」 제3조의3제1항)

○ 병원

-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(「의료법」 제3조의2)

○ 치과병원

-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 중 주된 진료과목이 치과인 곳(「의료법」 제3조의2)

○ 한방병원

-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 중 주된 진료과목이 한의과인 곳(「의료법」 제3조의2)

○ **요양병원**

- 30개 이상의 요양병상(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)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(「의료법」 제3조의2)

○ **의원**

-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(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)

○ **치과의원**

- 치과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(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)

○ **한의원**

-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(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)

○ **약국**

-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[약국제제(藥局製劑)를 포함한다]를 하는 장소(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)를 말함. 다만, 의료기관의 조제실을 예외로 함(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)

○ **보건소(보건지소)**

-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의 시·군·구 단위에 설치된 보건행정기관으로서, 보건소의 지소를 보건지소라 함(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)

○ **보건의료원**

- 보건소 중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를 말하며, 보건소 업무에 진료 및 입원기능을 특화한 것으로 주로 의료취약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여 설치·운영함(「지역보건법」 제8조)

○ 조산원

-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·해산부·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·상담을 하는 의료기관(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 제2호)